

94200 수목관리

1 부.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절은 조경공사 준공직후 2년동안 시행하는 수목잔디관리공사 중 수목시비, 관수, 지주목 재결속작업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수목시비
2. 수목관수
3. 지주목 재결속

1.2 관련 시방절(SECTION)

1.2.1 93100 수목이식

1.2.2 93200 수목식재

1.3 제출물

『01210 제출자료』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량 및 제출기한은 발주시방에 따른다.

1.3.1 견본

제출견본은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부산물비료

- (1) 제출량: 밀봉용기 비료 1포
- (2) 횟수: 제품이 바뀔때 마다 1회

2. 고품복합비료

- (1) 제출량: 밀봉용기 비료 1포
- (2) 횟수: 제품이 바뀔때 마다 1회

1.3.2 제품자료

1. 『03210 시공상세도면, 재료공급원 일람표, 제품자료 및 시료, 기타제출자료』 절의 "1.6 제품자료"에 따른다.

2. 수급인은 1항에 따라 제품 및 자재사양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제출항목은 별도 발주시방에 따른다.)

1.3.3 시공상태 검측확인서

수급인은 시공전 이 절 "3부. 시공" 내용에 따라 시공상태 검측확인서를 작성·제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 작업시행서류

1.4.1 수급인은 각공정(시비, 관수, 지주목재결속)별로 작업상황이 명료하게 나타나도록 촬영한 칼라사진(4'×6')을 각 회차의 작업이 완료될때마다 감리원에게 시행작업 내용 및 시행작업량과 함께 정식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1.4.2 수급인은 시비작업의 경우 적정량을 시비하였음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비료구매 영수증등)를 각 회차의 작업완료시 포함 제출하여야 한다.

1.5 품질보증

1.5.1 시험시공

수급인은 수목관리작업 시행전에 시험시공을 실시하고 그 실시결과에 따라서 기능공에게 시공방법 및 시공주의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시공 부위는 목적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 수목시비

(1) 시험시공량: 교목 3주, 관목 50주

(2) 횟수: 매 시비작업 시행시

1.6 운반, 보관, 취급

수목관리작업에 사용될 부산물비료 및 고품복합비료는 외기의 영향(햇볕, 건조, 동결, 습기피해등)을 받아 변질되지 않도록 바람이 잘 통하는 창고에 또는 덮개로 덮어 보관하여야 한다.

1.7 시공환경 요구사항

1.7.1 장기간 이상고온이거나 병발생시에는 시비를 피해야 한다.

1.7.2 동절기의 경우 0℃ 이하일 경우에는 관수를 시행할수 없다.

1.7.3 하절기 고온기로 기온이 30℃ 이상의 고온일때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출전 또는 일출시까지나 일몰시 또는 일몰이후에 관수를 시행한다.

1.8 준공서류

수급인은 수목관리작업 완료시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 완료된 『94100 잔디관리』 작업 부분과 함께 공사 관할 지사·사업단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2 부. 자재

2.1 재료

2.1.1 고품복합비료

1. 복합비료 일반사항은 『93100 수목이식』 절의 "2.1.3의 복합비료" 에 따른다
2. 형태는 도액형으로 개당중량은 [15] []g 이어야 하며 허용중량은 $\pm 10\%$, 파손율은 5% 이내이어야 한다.
3. 제품의 성분변화가 없어야 하며 비료의 낱알모양이 균일해야 한다.
4. 제품은 운반반입 과정에서 고품상태가 유지되어야 한다.

2.1.2 부산물비료

『93200 수목식재』 절의 "2.1.5 부산물 비료" 에 따른다.

2.1.3 관수용 물

『93200 수목식재』 절의 "2.1.6 관수용 물" 에 따른다.

2.2 자재 품질관리

- 2.2.1 수급인은 현장반입자재에 대하여 자재구비요건에 부합되는지에 대하여 감리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 2.2.2 대체자재 사용에 대한 사항은 『05310 재료 및 기기』 에 따른다.

3 부. 시공

3.1 시공기준

3.1.1 녹지내 수목시비

1. 시비회수

연간1회로서 2년간 실시하되 4월에 실시한다.

2. 시비량

(1) 중교목류(수고 2.0 ~ 4.0m미만):부산물비료 5kg/ 회

(2) 대교목류(수고4.0m 이상) : 부산물비료 10kg/ 1회

3. 시비기준

(1) 뿌리분 돌레를 깊이30cm, 가로30cm, 세로50cm 로 파고 파낸흙과 퇴비를 교반하여 복토하여야 하고 약간의 비료를 표면에 살포한다.

(2) 활착된 뿌리가 다치지 않도록 주의하여 파야 한다.

(3) 환상방사형으로 시비하되 1회에는 수목을 중심으로 2개소에 2회째 작업시에는 1회작업의 중간 위치 2개소에 시비한다.

3.1.2 가로수 및 수목보호홀덤편개상의 수목시비

1. 시비회수

연간1회로서 2년간 실시하되 4월에 실시한다.

2. 시비량

(1) 수고 4m 미만 : 고품비료 6개

(2) 수고 4m 이상 : 고품비료 9개

3. 시비기준

(1) 측공시비법(:수목근부 외곽 표면을 파내어 비료를 넣는 방법)으로 시행하되 깊이 10cm로 파고 수목별 해당수량을 일정간격으로 넣고 복토한다.

4. 시비시에 반드시 비료가 직접 뿌리에 닿지 않도록해야 된다.

3.1.3 관수

1. 물받이

물받이는 해당수목 수관폭의 1/3크기로 하여 높이 10 ~ 15cm로 흙으로 물받이를 만들어서 관수시 물이 다른 곳으로 흐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관수

토양의 건조나 한발이 장기간 계속될 경우 감리원의 판단에 따라 상호협의하여 추가 관수를 계속할 수 있으며 추가 관수회수에 대해서 설계변경에 반영할 수 있다.

3. 관수회수 및 대상

(1) 관수회수는 연간 5회 관수를 기본으로 한다.

(2) 전수목(고사된 하자수목제외)을 대상으로 물탱크가 적재된 살수차량을 사용하여 관수시행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3) 관수대상은 모든 교목·관목 면적이며 교목은 1주당 1㎡, 관목은 10주당 1㎡로 한다.

(4) 스프링쿨러가 설치된 지역은 관수면적에서 제외한다.

3.1.4 지주목 재결속

1. 시행회수

(1) 조경공사가 상반기준공(1.1 ~ 6.30)인 경우 :준공 이듬해 월에 회 실시

(2) 조경공사가 하반기준공(7.1 ~ 12.31)인 경우 :관리공사가 완료되는 해 월에 실시

2. 시행기준

(1) 준공도와 일치하도록 시공하되 주풍향을 고려하여 설계도 내용대로 시공하여야 한다.

(2) 지주목과 수목의 결박 부위에는 필히 완충재를 삽입하여 수목줄기의 손상이 방지되어야 하며 유실된 완충재는 수급인 부담으로 재설치한다.

3.2 현장품질관리

3.2.1 수급인은 시공상태 검측확인서에 따라 사전에 시공상태를 검측확인하고 현장대리인의 서명날인 제출후 감리원 입회하에 시공상태가 적합한지를 검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2 수급인은 검사시 시공상태가 적합하지않을 경우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3 현장뒷정리

수급인은 수목관리작업이 끝나면 깨끗이 정리청소하고 여분의 자재, 공포대, 기타 쓰레기 등을 수급인 책임하에 외부반출처리 하여야 한다.